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 행정과	1

(2015. 12. 4)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7일(화), 마포구청장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4년 11월 20일(금)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 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5. 검토보고

- 동(同) 개정조례안은 현석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법정동(현석동, 신수동)으로 분할되어 있어, 준공이후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법정동의 혼란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능률도 저해할 수 있는 바, 이를 하나의 법정동인 현석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에 개정연혁표 11을 신설하여 현석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신수동 430-5번지 외 62필지 6,495㎡를 법정동인 현석동으로 편입하고자 제출된 것임

○ 사업구역 및 경계조정 대상 토지

행정동	법정동	필지	면적(비율)	비고
신수동	현석동	201필지	31,848㎡(83.06%)	-
	신수동	63필지	6,495㎡(16.94%)	법정동 변경

7.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광웅)으로부터 2015.4.23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경계변경 신청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고, 동 정비사업의 소재지는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로 면적 38,343㎡, 용적률 297.79%, 공동주택(아파트)는 8개동 773세대(지하3층, 지상35층)이며, 정비사업이 2016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동일한 정비사업구역 내 1필지 토지가 2개의 법정동(현석동, 신수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신수동 63필지 6,495㎡를 현석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변경하여 이를 1개의 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법정동 경계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의견과 지역주민 및 지역구 의원도 현석동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어 신수동을 현석동으로 경계조정하는데 이견이 없으며,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아파트 준공이후 입주민들이 각종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혼용표현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준공 이전에 2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 지번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5. 9. 24. ~ 10.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조합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신수동 63필지 6,495㎡를 하나의 법정동인 현석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아파트가 준공이후 법정동의 혼용 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준공 이전에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관련공부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8. 참고사항

- 개정연혁표 11

개정연혁표 11
<p>신수동 430의 5번지, 신수동 445의 22번지, 신수동 445의 24번지, 신수동 445의 27번지, 신수동 446의 3번지, 신수동 446의 9번지부터 신수동 446의 10번지까지, 신수동 448의 37번지, 신수동 448의 41번지, 신수동 448의 45번지, 신수동 449의 1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17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19번지, 신수동 449의 23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25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30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52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54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55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59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61번지까지, 신수동 449의 63번지부터 신수동 449의 66번지까지를 현석동에 편입한다.</p>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